

科學技術基本法

「 全會一致 가 (1995 11 15 , 가 130). 1995 11 21 「

「 」 , 「 」

1. 「 」

「 」 5 , , 19 , (< 1 >) .

「 」 , 가 , 가가

1) 「 」 (1)

「 」 1 , ... (中略) ... , 「 () 「 」 .

, 「 」 「

< 1 >

제1장 총칙

본 법의 목적,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방침, 국가·지방공공 단체의 책무, 시책의 책정 등에 있어서의 배려사항, 법제상의 조치 및 연 차보고 등의 일반·공통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총칙

- 제1조 목적
- 제2조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방침
- 제3조 국가의 책무
-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
- 제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의 책정 등에 있어서의 배려
- 제6조 대학 등에 관련되는 시책에 있어서의 배려
- 제7조 법제상의 조치 등
- 제8조 연차보고

제2장 과학기술기본계획

「과학기술기본계획」에 대하여 규정해야 할 사항, 책정 및 변경절차, 요지의 공표, 동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관한 조치에 대한 규정

[제9조] 과학기술기본계획

제3장 연구개발의 추진 등

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강구하는 시책

- 제10조 다양한 연구개발이 균형을 이룬 추진 등
- 제11조 연구자 등의 확보 등
- 제12조 연구시설 등의 정비 등
- 제13조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정보화의 촉진
- 제14조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교류의 촉진
- 제15조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자금의 효과적 사용
-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
- 제17조 민간의 노력 조장

제4장 국제적인 교류 등의 추진

국가가 강구하는 국제적인 교류 등의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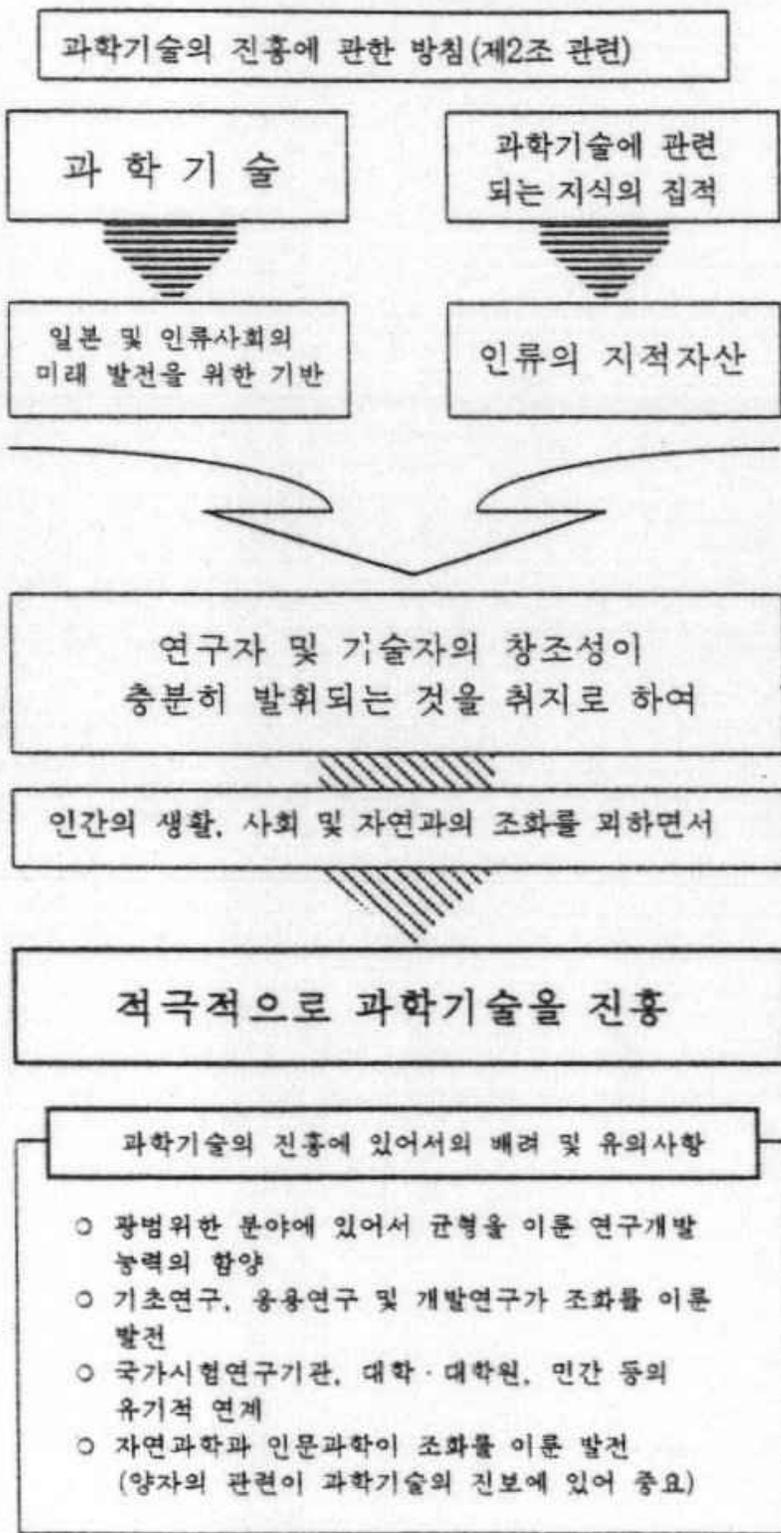
[제18조] 국제적인 교류 등의 추진

제5장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 등

국가가 강구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진흥안

[제19조]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 등

부 칙 [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것을 규정]



3) 가 (3 ~ 6)

3 가 (,) 「 10 19 (3 5)

4 「 가 」

책무 · 배려사항 등(제3조~제6조 관련)

국가의 책무

-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책정 및 실시

지방공공 단체의 책무

- 국가의 시책에 준거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
-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의 책정 및 실시

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의 배려

기초 연구

- 새로운 현상의 발견 및 해명을 가져오는 것
- 독창적인 신기술의 창출 등을 가져오는 것

- 성과에 대한 전망을 처음부터 세우기가 곤란
- 성과가 실용화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음

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

기초연구의 추진에 있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에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.

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

대학 등 (대학·대학공동활용기관)에 관련 되는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

대학 등에 관련 되는 시책

- 대학 등에 있어서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.
- 대학 등에 있어서 연구의 특성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(연구자의 자주성의 존중 등)

가

6

4) (7)

7

가

3

5

, 政省令

5) () (8)

8

가

1

()

()

6) (9)

9

가

1

2

가

가

3

(4),

要旨

(5).

9

6

6

가

가

, 兩院

附帶決議가

10

5

가

가

가

7) 가가 (10 ~ 19)

3 5 (10 19) 가가
9

10 「 가 , 가

」
「 」 ,

가

上記

가 「 가 」

()

11 () ,

「 1 」 , Post Doc. fellowship 條文中

2 「 가 (가 」) , 가

3 , 가

